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8. 30.(월) 1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년 8월 30일
전문위원 배 금 택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1 - 81
- 나. 발 의 자: 이충숙 의원 외 7명
- 다. 발의일자: 2021년 8월 13일
- 라. 회부일자: 2021년 8월 18일

2. 제안이유

구민의 안전을 위해 운영되는 안전보안관 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안전보안관 위촉, 대표단 구성, 활동, 활동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안 제7조)
- 다.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표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안 제9조)
- 라. 시행규칙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 나. 협조부서: 안전관리과
- 다. 입법예고(2021. 8. 17. ~ 8. 22.)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취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 제정내용

○ 목적(안 제1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¹⁾이 신설(2019. 12. 3.)됨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정의함

○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등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함

1)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교육 및 임기,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안 제5조)
 - 최초 위촉 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함
 - 안전보안관의 대표와 부대표는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 안전위반 행위 신고,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 등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며,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의 현황 관리에 대하여 규정(안 제8조)
 -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촉 시, 안전보안관증 회수에 대하여 명시함

- 표창 규정(안 제9조)
 -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음을 규정

다. 종합의견

- 정부는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민이 동참하는 안전신고 활성화와 안전문화를 확산코자, 舊우리동네 안전감시단('15.7.~'18.6.)을 2018. 10.부터 '안전보안관'으로 개편하여 전국적으로 운영²⁾하고 있음
- 본 제정안은 '안전보안관 운영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 이를 통해 안전보안관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전세대가 함께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존 안전보안관 구성원³⁾의 다양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시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안전보안관 현황: '19년 9,205명 → '20년 **9,512명**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인원	1,203	1,239	213	304	233	214	227	101	1,338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인원	660	551	775	647	440	430	810	127	9,512

3) 강서구 안전보안관 현황

○ 운영 현황

- 구성인원: 55명(남 20명, 여 35명), 서울시장 위촉
- 임원진(단장 등 5명), 권역별로 5개조(동별 1~6명, 조별 10~12명) 구성

○ 연령별 구성 현황

(2021. 1.기준)

연령(명)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비율(%)	55	0	0	1	0	19	26	9
	100	0	0	1.8	0	34.5	47.3	16.4

▶ 구성원의 50대~60대 비율이 전체의 81.8%이상을 차지함.

참고1

안전보안관 운영조례 제정 현황('20.12.31)

구 분	시군구	기제정 및 예정				미제정	비고
		소계	기제정 ('20.12월 기준)	'21년 이내	'21년 이후		
계	229	166	21	140	5	63	
서울	25	-	-	-	-	25	
부산	16	10	1(북구)	9	-	6	
대구	8	-	-	-	-	8	
인천	10	10	3(남동구, 계양구, 서구)	7	-	-	
광주	5	5	-	-	5	-	광주시 통합조례 준비 중
대전	5	3	-	3	-	2	
울산	5	5	1(동구)	4	-	-	
세종	1	-	-	-	-	1	
경기	31	29	1(구리)	28	-	2	
강원	18	7	1(동해)	6	-	11	
충북	11	11	2 (청주, 충주)	9	-	-	
충남	15	9	4 (천안,아산, 서산, 홍성)	5	-	6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 에 관한 조례 기 제정('19.10.30.)
전북	14	14	-	14	-	-	
전남	22	22	-	22	-	-	전남도 통합조례 준비 중
경북	23	23	2 (김천, 영천)	21	-	-	
경남	18	16	6 (진주,거제, 양산, 의령, 산청, 합천)	10	-	2	
제주	2	2	-	2	-	-	제주도 통합조례 준비 중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3. 8. 6.]

[제6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4는 제66조의8로 이동 <2017. 1. 17.>]